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무직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신설〉

- 윤호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101호)
- 황명선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530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 개	요		1
【윤호중의원안】			1
【황명선의의원안】			3
II . 검토의견			5
1. 개정안의 주요내용			5
2. 검토의견			9

I. 개 요

【윤호중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윤호중의원 등 15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8. 22.

다. 회부연월일 : 2024. 8. 2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 전문에도 불구하고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하거나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고, 그 행위자가 독립운동, 역사 관련 기관의 장이나 장·차관직에 버젓이 임명되고 있음.

헌법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이들이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주요 공직에 진출하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 반역사적 사태라 할 수 있음.

이에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의 방법으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정당화·미화·왜곡하거나 찬양·고무·선전하거나 헌법 전문 또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는 장·차관 등의 정무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여 헌법 정신을 지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발전시키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황명선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황명선의원 등 16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9. 2.

다. 회부연월일 : 2024. 9.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은 「헌법」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여야 함.

그러나, 최근 헌법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부인·날조하는 발언을 하는 인물을 장·차관에 지명하거나 임명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일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등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군 교재에서 삭제하거나 분쟁지역으로 표현하고 관련 조형물들을 철거하는 등 향후 공직에 나서는 자들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왜곡·날조 역시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의 방법으로 국경일 내지 기념일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하거나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영해 및 영공 등 그 사실에 대하여 부인·왜곡·날조한 자를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에서 우리나라 헌법 가치와 역사의식 및 영토주권의 인식 등을 바로 세우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윤호중의원안은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 발언의 방법으로,

1)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정당화·미화·왜곡하거나 찬양·고무·선전한 사람, 2) 헌법 전문 또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사람이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임용결격 사유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등).

황명선의원안은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 발언의 방법으로,

1)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정부 주관 기념일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 3)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영해 및 영공 등 그 사실에 대하여 부인·왜곡·날조한 자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임용결격 사유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등).

현행	윤호중의원안	황명선의원안
제3조(적용 범위) ① (생략)	제3조(적용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3조와 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5조와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 ----- -----제33조와 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3조의2를 적용하며,----- ----- ----- ----- -----.	② ----- ----- ----- -----아니하고 제33조의2를 적용하며----- ----- -----.
③·④ (생략) <신설>	③·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정무직공무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	③·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정무직공무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

현행	윤호중의원안	황명선의원안
	<u>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의 방법으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정당화·미화·왜곡하거나 찬양·고무·선전한 자</u> 2. <u>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u>	<u>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의 방법으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u> 2. <u>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u>

현행	윤호중의원안	황명선의원안
	<u>발언의 방법으로 헌법 전문 또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u>	<u>발언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정부 주관 기념일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u> 3. <u>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영해 및 영공 등 그 사실에 대하여 부인·왜곡·날조한 자</u>
제33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생략)	제33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현행 제33조의2와 같음)	제33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현행 제33조의2와 같음)

2. 검토의견

공무원의 임용결격 사유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자질에 흠결이 있거나 행위능력·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공무담임의 기본권 행사가 금지되는 일정한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¹⁾²⁾ 현행법 제3조에 따르면, 정무직공무원³⁾에 대해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임용 당시 임용결격 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임용권자의 과실로 그 사유를 알지 못하여 임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임용행위는 당연히무효에 해당함.

3)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② (생략)

-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4. (생략)

④ (생략)

서는 제33조에 따른 임용결격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함.⁴⁾

개정안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임용의 원칙 하에서 이루어지던 정무직공무원 임용 대상자에 대한 헌법관 및 역사관의 검증에 관한 사항을 법률상의 제도로 편입시켜 일정한 요건 하에 당사자를 정무직공무원 임용에서 절대적으로 배제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가 정무직공무원 임용 행위에 대해 일정한 범위에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정무직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헌법관과 역사관, 국가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은 포괄적인 당위성 차원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는 바, 그릇된 헌법관과 역사관,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신설하여 정무직공무원 인사의 적정성을 담보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이해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과 같이 역사적 사실이나 헌법 전문, 대한민국의 영토·영해 및 영공 등에 관하여 과거에 행하였던 발언 등 의사표현을 이유로 당사자를 정무직공무원의 임용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국가공무원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3조와 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5조와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④ (생략)

가. 개정안 임용결격 사유의 주관적 모호성 여부

임용결격 사유는 그 밖의 다른 자격요건이나 능력 등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공무원 신분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소극 요건으로서 통상적으로 해당 사유의 존재 여부가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각 개정안에 따른 임용결격 사유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배와 전쟁범죄, 헌법 전문 또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정당화, 미화, 왜곡, 찬양, 고무, 선전, 부인, 날조”한 경우,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사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정부 주관 기념일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사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영해 및 영공 등 그 사실을(에 대하여) 부인·왜곡·날조”한 경우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구체적인 상황이나 경위, 취지 또는 의도 등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현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주관적인 해석과 판단의 여지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해당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임용권자의 주관적인 해석과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면 임용권자가 정무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 이상의 실질적인 규범력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이들 개정안의 임용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공직 임용을 배제하는 절대적인 소극 요건

으로서 적정성을 갖추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봄.

나. 기본권 제한의 원칙 준수 여부

개정안들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제25조5)에 따른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법률에 해당할 뿐 아니라, 당사자가 하였던 발언 등 의사 표현의 내용이 일정한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임용권자가 확인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직임용의 기회를 절대적으로 박탈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⁶⁾⁷⁾를 제한하는 법률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공무담임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도 헌법 제37조제2항⁸⁾에 따라 법률로 제한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

5) 「대한민국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6) 「대한민국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행위가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 또는 예술표현의 수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면 헌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학문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음.

[헌법재판소, 94헌가6, 1996.10.31.]

“의사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여기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음반은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 및 판매 배포는 학문·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2조제1항에 의하여 보장받음과 동시에 헌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

8)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 제한 입법에 대하여 요구된다
고 판시한 바 있고,⁹⁾ 특히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 원칙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에 요구되는 명확성의
정도를 엄격한 의미에서의 명확성이라고 보고 있음.¹⁰⁾

각 개정안이 임용결격 사유를 통하여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로서 제시하고 있는 요건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상황이나 경위, 취지 또는 의도 등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현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관적인 해석과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바, 기본권 제한 입법에서 요구되는 명
확성을 충족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또한, 개정안들은 당사자가 과거에 행하였던 발언 등 의사표현이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 헌법 전문 또는 역사적 사실, 대
한민국의 영토·영해 및 영공 등 그 사실에 대해 정당화, 미화, 왜곡,

9) [헌법재판소, 2000헌가8, 2002.1.31.]

“법치국가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 제한 입법에 대하여 요구된다. 규범이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한 법집행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10) [헌법재판소, 2012헌바37, 2013. 6. 27., 전원재판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야기하고, 그로 인하여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능케 함으로써 그러한 표현들이 상호 검증될 수 있도록 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케 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

“심판대상조항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형벌조항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의 명확성원칙을 요구한다 할 것이며, 그 정도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명확성이라 할 것이다.”

찬양, 고무, 선전, 부인, 날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 당시의 견해나 입장을 불문하고 일정한 기간적 제한 없이 이를 영구적인 임용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로, 헌법재판소¹¹⁾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 나목과 관련하여 범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여 범행 이후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음.

다. 당연퇴직 규정 추가 신설 여부 등

임용결격 사유의 경우 통상적으로 재직 중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당연퇴직 제도와 연계되어 있음.

따라서, 정무직공무원이 재직 중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전쟁

11) 국가공무원법(2020헌마1181, 2022. 11. 24 선고/ 2020헌마 1605, 2023.6.29.), 지방공무원법(2020헌마 1605, 2023.6.29..)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주요 내용(2020헌마1181, 2020헌마1605)

- ▶ ①다양한 임용예정 직무, ②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유형이나 경중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공무원임권을 ③영구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 ▶ 개별 범죄의 비난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 가능
- ▶ 입법자가 여러 정책적 대안을 숙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위헌성을 해소하도록, **2024. 5.31.을 시한으로 계속 적용**(위헌성을 확인하면서도, 더 위헌적인 법적공백 상태 방지를 위한 예외적 결정)

범죄, 헌법 전문 또는 역사적 사실, 대한민국의 영토·영해 및 영공 등 그 사실에 대해 정당화, 미화, 왜곡, 찬양, 고무, 선전, 부인, 날조” 하는 발언 등 의사표현 행위를 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신설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정무직공무원 중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상의 임용결격 사유로 규율하기 보다는 「공직선거법」 제16조¹²⁾에 따른 피선거권의 문제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인사혁신처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법집행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 현행법 체계상 다른 결격사유와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무직공무원¹³⁾의 임용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12)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②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舉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는 選舉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舉日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④제3항 전단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13) 정무직공무원은 효율적인 조직·인사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임명권자에게 임면 관련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임(서울행정법원, 2000구2623).

경우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점, 정무직공무원의 역사관 등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이미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참고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람 등을 임명 또는 위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하였는지 등이 불분명한 경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등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으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¹⁴⁾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

14) 이견태의원 대표발의, 2024. 8. 14., 의안번호 제2202861호

문 의 처

02)6788-5342